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

[ ]양육수당

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 [ ]의료비

[ ]그 밖의 양육보조금

*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

신청인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	
	신청구분	급여·서비스내용

[ ] 결정(적합)

신청인과의 관계	급여대상자	생년월일	급여내용	지급금액	금융기관	계좌번호	급여개시일

[ ] 결정(대상제외)

대상제외사유	

귀하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3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담당자: 직급 성명 전화번호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안내 사항

1. 입양아동 양육수당/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지급 결정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. 다만,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는 그 다음달 20일에 함께 지급됩니다.
   - 또한, 지급일(20일)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·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.
2.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·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.